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9. 5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3일
- 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9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효율적인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제3항)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제4항)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없애고,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추가(안 제11조제2호, 안 제11조제5호 신설)
(당 초) 4개 기능 ➡ (변 경) 6개 기능

- 주민제안사업 의제발굴 및 검토(안 제11조제2호)
-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(안 제11조제5호)
- 당연직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제1항)
 - 당연직위원의 삭제와 관련하여 당연직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삭제
- 조직개편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개수 삭제(안 제15조제2항 및 제7항)
 - 업무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 구성사항을 업무분야별 구성으로 수정
 - 제7항의 “위원회의 규정”을 “위원회의 결정”으로 수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안 제10조제3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(17개구에서 기 시행중임),
- 안 제10조제4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없애고,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(12개구에서 기 시행중임),
- 안 제11조 제2호 및 안 제11조 제5호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4개 기능 외 주민제안사업 의제 발굴 및 검토와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의 2개 기능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였으며,
- 안 제12조 제1항에서 당연직위원의 삭제에 따라 그 임기에 관한 사항도 삭제하였으며,
- 또한, 안 제15조 제2항에서 조직개편에 따라, 분과위원회 개수를 6개 이내의 분과구성 사항을, 업무분야별 구성으로 개정하였으며,
- 안 제15조 제7항에서 “그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”를 그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, 위원회의 결정으로, 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5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 제3항)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

나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 제4항)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없애고,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

다.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추가 (안 제11조)

(당 초) 4개 기능 ➡ (변경) 6개 기능

- 주민제안사업 의제발굴 및 검토
-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

라. 당연직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 제1항)

- 당연직위원의 삭제와 관련하여 당연직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삭제

마. 조직개편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개수 삭제 (안 제15조 제2항 및 제7항)

- 업무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 구성사항을 업무분야별 구성으로 수정
- 제7항의 “위원회의 규정”을 “위원회의 결정”으로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5.25. ~ 6.14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”를 “위원장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,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, 위촉직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, “해당하는”을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호,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, 제4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주민제안사업 의제발굴 및 검토

5.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

제12조제1항 중 “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위원의”를 “위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촉직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6개 이내의 분과로”를 “분과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규정”을 “결정”으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이라도”를 “중이라도”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위촉직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</u>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<u>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</u>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<u>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,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</u>,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⑤、⑥ (생략)</p> <p>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위원장과</u> ----- -----.</p> <p>④ <u>위원</u>----- ----- -----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、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기능) -----</p>

기능을 수행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3. (생략)

4. (생략)

<신설>

제12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직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분과위원회) ① (생략)

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위원을 대상으로 하며, 구의 업무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.

③ ~ ⑥ (생략)

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.

⑧ (생략)

제18조(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주민제안사업 의제발굴 및 검토

3.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5.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

제12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-----

-----.

② 위원-----

-----.

제15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분과를 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 결정 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해촉) -----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
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
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제21조(재정 및 실무지원) ①、②
(생략)

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
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
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
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---- 중이라도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재정 및 실무지원) ①、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위원-----

-----.